<u>청 원 원문</u>

[청원의 취지]

®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서명인의 의견 전달 및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『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은 위법 부당한 법률안으로 입법반대•폐지 요청

[청원의 이유 및 내용]

- ®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(2017.2.16.)한 이후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과 시민의 거센 항의집회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사업
- ® 현행 『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상,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어떠한 협의 동의가 없음에도 김진표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수원시의 민원해결을 위해 수원전투 비행장을 화성시로 강제이전 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(2023.11.13.)
- ® 본 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,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겪게 될 피해 대상자인 화성시민의 의견수렴와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비민주적 법안
 - ® 또한, 본 제정안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옮기고 종전부지 수원시에 K-실리 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, 이는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이전부지인 화성시에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발로한 지역차별 법안